



'20. 6. 8.(월) 10:00
운 영 위 회 의 실

-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-
검 토 보 고 서

의회운영위원회
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개 요

- 제 출 자 : 김영주 의원 등 10인
- 제출일자 : 2020년 6월 4일
- 회부일자 : 2020년 6월 8일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의 중요성 등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는 증대 되고 있으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민의를 대의하는 충청북도 의회의 위상과 지위 등을 규정한 기본 조례가 없는 상황임
- 충청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

3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의회 의 총칙(안 제2조 ~ 제4조)
-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0조)
-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20조)
- 의원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 ~ 제27조)
-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28조 ~ 제43조)

-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·답변(안 제44조 ~ 제50조)
- 질서 및 경호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1조 ~ 제56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가 증대되는 현실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아 민의를 대변하는 충청도의회 위상과 지위 등을 규정한 기본 조례가 없는 상황이므로
- 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된 내용을 총 7장 57조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충청북도의회 총칙 규정
 -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
 -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는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
 - 안 제21조에서 제27조까지는 의원에 관한 사항
 - 안 제28조에서 제43조까지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
 - 안 제44조에서 제50조까지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·답변에 관한 사항
 - 안 제51조에서 제56조까지는 질서 및 경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- 또한,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,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,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위 조례를 폐지할 예정임

- 아울러 그 동안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었던 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,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,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등 3건의 규칙에 대하여 기본조례에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1부. 끝.